

광주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51871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윤춘주, 김대현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단비

5. F

변 론 종 결 2024. 1. 1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 C,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하여 : 주문과 같다.

피고 E, F에 대하여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E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원고의 동의와 합의 하에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였고 이에 따른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E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어 보증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라 제1, 2, 3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G은 2018. 5. 31.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9. 5. 31., 이자는 월
2%로 하여 차용하고, 소외 H은 이를 연대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갑
제1호증), 이어 2018. 6. 4. 채권자를 A(원고), 채무자를 소외 G으로 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주) I(2022. 1. 27. 피고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J, H, D, C, E로 하는 채무 보증 약정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은 사실(갑 제2호증), 그리고 2019. 7. 2.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G으로 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주) I, H, C, D, F으로 하는 새로운 채무 보증 약정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다시 받은 사실(갑 제3호증), 한편 피고 E은 2018. 12.경부터 건강 악화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2019. 1. 24. 회사 이사인 D, C과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9. 5. 13.자로 대표이사직을 퇴임한 사실(을라 제1, 2, 3호증), 위 이행 약정서 제5항에는 ‘A 금전대차계약의 연대보증 공증의 건도 신임대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2019. 7. 2. 새로운 채무 보증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퇴임한 대표이사 피고 E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고 피고 F을 새로이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에 동의 또는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피고 F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F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적이 없고, 자신의 연대보증 날인은 위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7. 2.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G으로 한 1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주) I, H, C, D, F으로 하는 채무 보증 약정서가 작성되고 인증을 받은 사실(갑 제3호증), 그러나 피고 F은 (주) I의 주주로서 K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보증용도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에 대한 채무보증용도로 교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 C, D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경찰서는 혐의 인정하여 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날인은 피고 C, D이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위조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중

별지